

# 공공녹화용 콘테이너 재배수목의 식재기술 개발(Ⅲ)

송 상 택 / 동별당 대표이사

## 제 3 장 공공용녹화수목의 품질치수규격기준(안) 작성조사

### 1. 기준안 책정의 전제조건

공공녹화공사용의 노지재배수목의 품질·치수규격에 대해서는 이미 건설성의 고시에 나와 있으며, 실제로 시공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콘테이너재배 수목은 노지재배 수목과 사용하는 장소, 사용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규격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되며 그 중에서 콘테이너 부분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다음의「공공용녹화수목 품질치수규격(안)」을 인용한다. 먼저, 재단법인 일본녹화센터 편집, 건설성 도시국공원녹지과 도시녹지대책실 감수의「공공녹화수목의 품질치수규격기준(안)의 해설」(1988년 발행)에서 이 기준(안)의 목적, 책정경위,

운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공공용녹화수목 품질·치수 규격(안)의 개요

##### 1-1 공공용 녹화수목품질 치수규격 기준(안)의 목적

도시녹화에 관한 사안의 진전과 함께, 녹화용 수목에 대한 수요는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녹화용 수목의 안정적인 공급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그 기초로 될 만한 이들 수목의 품질치수규격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반드시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공공용 녹화사안인 공사의 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공사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널리 공개되고 그에 따른 적정한 작

업이 진척되는 것과 함께 수목(재료)생산자, 건설업자, 설계자, 시공관리자, 감독자들 사이에 작업내용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공공용녹화수목의 품질·치수규격(안)은 각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준을 전국적인 통일기준(안)으로 작성하고 공공용녹화수목의 안정적 수급, 품질의 표준화 및 규격의 통일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 1-2 공공용 녹화수목 품질 치수규격기준(안)의 책정경위

본 안의 작성에 있어서 책정하기 위한 조사로서 기초적 조사, 또 시방서 등의 계속된 자료수집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안정적으로 다량 생산, 유통하고 있는 녹화용 수종을 선택하고 기

초적인 치수 및 품질규격에 대한 취급상태에 대하여 「생산자측(주로 생산업자 및 관계단체)」 및 「수요자측(都道府縣, 주요도시 및 관계단체)」으로 나눠 현지조사 및 앙케이트 조사를 행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공공용 녹화수목의 품질·치수규격기준(안)이 책정되고, 80년 12월 10일부로 건설성 都線對發 第8號에 의해 건설성 각 지방건설국, 지방공공단체, 공단 등의 발주자단체, 유통단체, 생산자단체 및 시공자단체 앞으로 제1차 통지를 하고 81년 4월 1일부터 운용하게 되었다. 이즈음 대상수종은 67종이었다. 다음으로 81년 12월 2일부로 건설성 도녹대발 제25호 「공공용 녹화수목의 품질치수규격기준」(안)의 개정 및 운용 등에 대하여'에 의한 용어의 정의 중 일부 품질규격 및 치수규격이 개정되었다. 북방계, 남방계수목 등 44개 수종이 추가되고 82년 4월 1일부터 운용하게 하였다. 제1차 개정의 운용결과에 대해 각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의견 등을 거듭 취합하여 내용검토가 행해졌다.

금번 87년 3월 10일부로 건설성 도녹대발 제12호에서 다음의 개정통지가 행해지게 되었다.

1-3 공공용 녹화수목 품질 치수규격기준(안)의 운용에 대하여

본 기준(안)은 공공식재 공사

에 대해서 치밀하게 운용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면서, 지역적 조건, 설계조건, 현장조건 등에 의해 본 기준(안) 이외의 규격 수목 및 수종사용이 필요한 케이스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의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말해 본 기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시안이며 대상수목도 전국적으로 수급이 많은 것이 대부분이지만 선정된 수종이 이미 전국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제한하지 않았다. 북해도와 남구주, 오끼나와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북방계, 남방계의 수목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것은 취급하고 있으나 기타 지역과 비교해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것들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

본 기준(안)은 공공용녹화수목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공공용에서도 치산, 사방 등의 산지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공원녹지, 도로, 공공시설 등의 녹화에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재료로 도시녹화의 용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오히려 본 기준(안)의 규격은 공공용녹화수목의 재료로서의 규격이며, 식재하여 활착이 양호하게 되도록 육성된 녹화재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히 생육한 수목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재료로서의 규격이라는 것은 식재공사에 있어서는 반입시의 규격을 의미하며, 공사에 수반되는 손질

(예초, 전정, 식재방법 등)에 의한 변화와 반입후의 시간경과로 인한 생장 등은 별도의 사안이다.

따라서 본 기준(안)은 수목의 설계상의 규격과는 다른 것이다. (이른바 예초하는데 소요초장(높이)를 편리대로 할 경우 재료의 치수는 보다 높은 수고를 가진 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뿐만아니라 식재목적, 식재장소 등의 식재조건에 의해서 본 기준(안)의 치수규격 및 품질규격 항목중에서 樹姿(나무의 전체모양새)에 관계되는 것에 대하여 본 기준(안)에 의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

## 2 공공용녹화수목 품질치수 규격기준(안)의 해설

### 2-1 기준의 목적

본 기준은 도시녹화를 위한 공공용녹화수목내에서 최소한의 필요수종에 대하여 그 품질규격치수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각종 공공시설녹화사업이 보다 적절한 집행을 추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본 기준은 품질과 치수의 규격에 대하여 구성되었으며, 대상이 되는 수목은 이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본 기준은 공공시설 등의 녹화에 있어서 본 수종을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기준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지역 혹은 조성계획상의 특성 등에 의한 수종의 사용, 다시말해서 본 치수규격

이외의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상기는 본 기준(안)의 운용통지(1977년 12월 10일 건설성도녹대발 제8호)의 주요 문안이다.

(해설)

녹화공사재료로서의 수목에 대한 규격은 수목이 생물재료인 까닭으로 타공사의 재료처럼 치밀

하고 통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공공시설 등의 녹화에 대한 설계, 시공감리의 명확화 및 양질의 재료공급 등 공사의 질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로 규격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기준(안)은 품질과 치수 양 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보여준다. 공공녹화용수목에 대해서는 현재도 상당수의 수종과 치수를 갖는 나무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본 기준은 그들 중 비교적 사용수가 많고 한편 생산량이 많은 대표적인 수종에 대해서 정한 것으로 이것들 이외의 수종, 치수규격인 것의 사용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표 3-1>

용어	정의
공공용녹화 수목	주로 공원녹지, 도로, 공공시설 등의 공공녹화에 사용되는 수목재료를 말한다.
수형	수목의 특성, 수령, 손질상태에 의하여 생긴 줄기와 수관에 의해 구성된 고유의 형태를 말한다. 또한 수종 특유의 형태를 기본으로 해서 육성되어진 수형을 「자연상태」라고 한다.
수고(H)	수목의 수관 정부로부터 근원상단까지의 수직높이를 말하며, 일부 돌출된 가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흉고직경(C)	수목의 줄기의 직경을 말하며, 지제부의 상단으로부터 1.2m 높이를 측정한다. 이 부분에 가지가 분지되어 그 줄기가 2개 이상인 수목의 경우에는 각각의 줄기 직경을 합해서 70%를 취하여 흉고직경으로 한다. 또한 「근원경」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줄기근원의 직경을 말한다.
수관폭(W)	수목이 사방으로 신장된 가지의 폭을 말한다. 측정방향에 따라 그 폭이 길고 짧음이 있는 경우에는 최장길기와 최단길기의 평균치로 한다. 또한 일부 돌출된 가지는 포함시키지 않으며, 葉長이라 함은 관목의 경우에 대하여 말한다.
분얼지(株立)	수목의 줄기가 근원 가운데서 분지하여 그런 상태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또한 株物이라 함은 관목에서 그런 상태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분얼수(株立數)	분얼근원에서부터 분지한 줄기(또는 가지)의 수를 말한다. 수고와 분얼수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2지 : 한개는 소요 수고에 달하고 다른 하나는 소요수고의 70% 이상에 미치는 것 3지 이상 : 과반수는 소요수고에 달하고 기타는 소요수고 70% 이상 되는 것
單幹	줄기가 근원 가까이서부터 분지하지 않고 1本으로 있는 것
도장(徒長)	枝葉의 신장만 왕성하고 조직의 충실은 동반되지 않는 상태
뿌리분(根鉢)	수목의 이식에 즈음하여 굴취된 근계를 포함하여 흙으로 감싼 것을 말한다.

계속해서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타 규격을 규정한 것에 덧붙여 전제조건이 되는 제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78년 12월 2일 건설성 도시녹화대책실발행 제25호, 1979년 4월 1일 이후로 적용, 1988년 3월 10일 일부개정)

**공공녹화 수목의 품질치수 규격(안)**

\*밑줄친 부분은 88년 3월 10일 부로 개정되었음

①(적용범위) : 이 규격은 주로 도시녹화용으로 제공된 공공녹화수목에 적용하고 수목의 반입시의 규격이 된다.

②(정의) : 이 규격에 대하여 <표 3-1>의 왼쪽란에 기술한 용어의 정의는 각각의 오른쪽란에서 서술하였다.

③(규격의 구성) : 이 규격은 품질규격(별표1)과 치수규격(별표2)으로 구성되며, 양 규격이 정한 범위를 합쳐서 수목의 규격으로 한다.

④(품질의 표시항목) : 수목의 품질은 크게 樹姿와 樹勢로 나뉘

<표 3-2>

수 고(H)	0.1	0.15	0.2	0.25	0.3	0.4	0.5	0.6	0.8
	1.0	1.2	1.5	1.8	2.0	2.5	3.0	3.5	4.0
	4.5	5.0	6.0						
흉고직경(C)	0.10	0.12	0.15	0.18	0.20	0.25	0.30	0.35	0.40
	0.45	0.50	0.60						
수 관 폭(W)	0.1	0.15	0.2	0.25	0.3	0.4	0.5	0.6	0.7
	0.8	0.9	1.0	1.2	1.5	1.8	2.0	2.5	3.0

정한 것으로 다음의 항목에 의거 표시한다.

수자 : 수형(나무전체모양새), 줄기(교목으로 보고 적용), 지엽의 배분, 지엽의 밀도, 枝下高. 수세 : 생육, 뿌리, 뿌리분, 잎, 수피, 가지, 병충해.

⑤(치수의 표시항목) : 수목의 치수는 필요에 따라 수고(H), 흉고직경(C), 수관폭(W), 분얼수(B·N) 등을 사용한다.

⑥(치수의 표시단위) : 수고(H), 흉고직경(C), 수관폭(W)은 어느 것이나 미터(m)로 표시하고 <표 3-2>와 같은 단위·계급치수를 이용한다. 분얼수(B·N)는 「○본이상」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本數는 2~, 3~ 등으로 표현한다.

⑦(품질 및 치수치의 판정) : 이 규격에서 정한 치수는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해당규격에 적합한 것은 정해진 치수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다.

통용기준(안)의 전제조건이 되는 부분은 이상과 같고 콘테이너수목도 대부분은 이에 따르는 셈이지만 약간의 변경을 요하는 점도 있다.

그것은 정의 가운데 「뿌리분」, 「오래된 구덩이」에 관한 것이다. 변경내용을 통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표 3-3>과 같다.

<표 3-3>

용어	노지재배수목에 관한 정의	콘테이너 재배수목에 관한 정의
뿌리분	수목의 이식에 즈음하여 굴취되는 근계를 포함한 흙의 통합을 말한다.	콘테이너수목에 있어서는 콘테이너 내부의 근계와 흙 전체를 말한다.
오래된 구덩이	수목의 이식에 즈음하여 흙의 통합을 매듭짓지 않고 굴취한 것. 넓은 뿌리, 작은 구멍이라고도 한다.	(콘테이너수목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정의에서 삭제한다.)

## 2. 컨테이너재배수목의 품질·치수규격의 현황과 문제점

### 1) 품질규격

녹화용컨테이너식물을 크게 분

류하면 교목, 관목, 지피식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삼자 모두 반드시 품질규격을 고려해야 하지만, 일부는 틀린 것도 있다. 앞서 기술한 기준(안)은 품질규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

하고 있다.

이 품질규격에 대해서는 컨테이너수목(및 지피식물 등)에도 상기의 표와 똑같은 내용으로 거의 지장이 없으나 독자적인 문제가 2, 3개 있다. 위원회에서 토의된

〈표 3-4〉 품질규격표(안)

\*밑줄친 부분은 88년 3월 10일부로 개정됨

### 1. 樹姿

항 목	규 격
수 형	수종의 특성에 따른 자연수 현상으로 수형이 가지런한 것
줄 기 (교목에 적용)	줄기가 거의 곧고 하나인 것(단, 분얼하는 것 및 자연수형으로 줄기가 비스듬한 것은 제외)
지엽의 배분	배분이 사방으로 균등한 것 도장으로 인한 생장, 혹은 기타 이상생장은 인정하지 않으며 마디사이가 줄어들어 지엽 치밀도가 양호한 것
지 하 고	수관을 형성하는 가장 아랫가지의 높이가 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

### 2. 수세

항 목	규 격
생 육	충실하여 생기가 있는 생육을 하고 있어서 활착력이 있어서 이식이 용이한 것
뿌 리	근계발달이 양호하고 사방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뿌리분 주위로 세근이 많고 건조하지 않은 것
뿌리분	수종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뿌리분을 갖고 있으며 분이 호트러짐이 없이 견고한 뿌리감기가 되어 있으며 건조하지 않은 것
잎	정상의 잎모양, 잎색, 밀도를 보유하고 시들음(변색, 변형)과 연약한 잎이 없고 생기가 있는 것
수 피	손상, 굵힌 흔적이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 것
가 지	자연스런 가지의 모양을 하고 고사지, 부러진 가지 등의 처리로 필요에 따라 적절한 전정행해진 것
병충해	발생이 없는 것. 과거에 발생했던 일이 있는 것은 그 정도가 경미하여 흔적이 거의 알 수 없도록 육성된 것.

사안은 다음과 같다.

### ① 줄기의 굵기에 대하여

줄기의 굵기는 치수규격의 하나이며, 동시에 품질에도 크게 관련이 있다. 수고에 비해 줄기가 가는 수목은 치밀하게 육성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며 수세가 약하다.

일본의 컨테이너 수목은 구미의 것과 비교하여 줄기가 가늘고 수관폭이 작다고 하는 점이 종래에 여러차례 지적되었다. 이것은 역사의 장에서 보듯이 일본에는 컨테이너 수목이 대부분 '생태학적 녹화'에 사용되는 교목의 幼木이라고 하는 시대가 길게 계속되었고, 이 점이 줄기의 굵기와 엽폭에 확실한 규격을 요구하지 않게 된 원인의 하나가 된 것이다. 또한 노지육성 수목에서는 (교목 성수목에 대해서도) 유목을 시공 현장에 식재하는 것과 사방공사 식재와 일부 공장녹화를 제외하면 건설성에서 정한 규격은 거의 없다.

따라서 비교할 기준이 없다고 하는 것이 되며 품질향상의 노력이 늦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컨테이너재배 수목이 녹화공사에도 대량으로 사용하게됨에 따라 생산자의 인식도 변하고 매년 개선되고 있다.

### ② 온실촉성재배품에 대하여

컨테이너 수목은 작은마디의 생육을 대폭 조절할 수 있으며,

과거에는 따뜻한 온실내에서 시비·관수를 빈번하게 행하고 급속하게 성장하는 유목을 출하하는 일이 일부에서 행해졌다. 이와 같은 수목은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한랭지에서 식재할 경우 고사하거나 한랭지에서 식재할 경우 고사하거나 수세가 쇠약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따뜻한 지방에서도 동절기의 식재에는 꽤 피해를 받는다.

이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대폭 개선되어 출하 전에 반드시 일정기간 바깥에 놓아두어 순화시키고 유묘시 이외에는 전기간 옥외에서 육성한 것이 생산되고 있다. 다만 시공자의 양케이트에서는 촉성재배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하는 회답이 약간 있었다. 이것이 촉성재배품종인지 혹은 난지의 생산지에서부터 한랭지의 시공현장으로 보내진 것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것인지, 혹은 시공자의 미숙으로 실패한 때문인지 검토를 요하는 과제이다.

### ③ 근계의 적절한 발달

무엇보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근계의 평가법에 따른 것이었다. 컨테이너수목은 컨테이너를 떼어놓기만하면 근계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식재공사에 즈음하여 근계검사를 하는 것은 용이하다. 그런데 컨테이너 수목의 근계는 이같은 상태로 있는 것이 이식에 즈음하여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은 잘 알 수 없다. 노지재배수목에서 억제되지 않고 신장

한 근계를 어떤 부분에서 잘라버리고 남은 부분이 뿌리분으로 되지만, 컨테이너수목에서는 원칙적으로 뿌리는 자르지 않는다. 한정된 용기내에서 신장한 컨테이너 수목의 근계는 「작지않고(미발달)→적량→과도신장」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보통은 과도신장하게되면 지상부의 생육이 쇠약해지기 전에 교체식재를 한다.

장기간 교체식재를 하지 않는 경우 뿌리가 용기벽을 따라 빙빙 돌게 되면 몇 겹으로 감아서 매트(mat)를 형성한다. 이렇게 되는 것을 Wrapping이라고 하며, 이대로 식재하면 성장이 정체되고 고사할 수 있다. 또한 역으로 컨테이너에 교체식재한 후 단기간에 출하하면 뿌리의 발달이 불충분하여 수송 중에 뿌리분이 깨어져 흙이 떨어져서 흠어지게 된다.

이처럼 어느 정도로 발달된 근계가 식재로 적절한가 하는 점을 쉽게 알아서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표현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활착하여 그루의 생장이 순조로운 것」을 적절한 판단기준으로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상당범위의 근계상태를 포함할 수 있다. 혹독한 시기에 90%를 잘라 취해버린 노지재배의 粗根과 비교한다면 컨테이너 수목은 저질품인 것도 제법 활착률이 좋다. 그러나 컨테이너 수목의 품질향상을 기하려고 하면 근계상태에 대해서도 얼마간의 규정을 하여 보다 양질의 수목이 공급되는 상황이 바

랍직하다.

문장, 그림, 사진 등으로 어느 정도 한정된 표현을 한다면 그것에서 제외된 것은 절대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콘테이너에 넣어서 일정기간 이상 육성한 것」이라는 규정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이라는 것이 수종, 육성계절, 육성기술, 수령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결국은 생산자의 양심을 신용할 수밖에 없다. 물론 경험이 풍부한 생산자와 시공자는 이러한 근계상태가 식재에 최적시기인지 아닌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콘테이너를 떼어놓을 때 뿌리분의 외벽에서 볼 수 있는 뿌리가 數本이 합쳐진 것과 거미집처럼 세균을 갖고 있는 수목은 여러가지 조건에서 활착률과 성장량이 어느 정도 다를지조차 자신을 갖고 쉽게 답할 수 없다. 이처럼 근계의 문제는 어렵고 분명하게 단정키 어려운 점이 많다.

## 2) 치수규격

치수규격에 관해서는 주로 교목에 대하여 검토했다. 관목은 노지 것과 같은 치수규격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콘테이너로 생산된 관목은 아직 비교적 적은 규격인 것

뿐으로 수고 0.5m, 수관폭 0.4m 까지이다.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콘테이너 생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되지 않지만 장래에는 이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피식물의 치수규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생산 유통하고 있는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친다.

교목에 대해서는

① 지금까지 대량으로 생산되어 유통하고 있는 수고 1.5m 이하인 것.

② 앞으로 생산이 증가하리라 예상되는 1.8m~3.0m인 것.

③ 3.0m 이상(수종에 따라 2.5m 이상)인 것. 현재는 노지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녹화 수목으로서의 치수규격기준(안)도 있음.

이상 3단계로 나눠 토의했다. 다음은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 ① 수고 1.5m 이하

지금의 치수규격은 일본식목협회가 협회내부의 목표기준으로서 정한 것에 불과하다. 규격으로서 표시한 항목은 「수고」, 「수관폭」, 「포트지름」, 「근원경」 등 4개이다.

육성된 콘테이너 수목을 몇몇 장소의 생산지에서 측정해보면 「良苗」라고 생각되는 것은 수관폭과 근원경이 동협회의 현재규격보다 대략 1단계씩 크기 때문에 이 규격은 약간 가는 수목을 기준

으로하여 붙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목표규격은 몇 번이나 개정되고 조금씩이지만 「굵고 수세가 강한 수목을 생산한다」라는 목표아래 기술개량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잠정적인 기준으로 이것을 채용했다.

### ② 수고 1.8~3.0m

수고 1.8m 이상의 콘테이너 수목을 생산하는 업자는 현재 전국에서도 수 개사 밖에 없고 수종도 극히 제한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수고 3.0m 정도까지만 「교체이식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이 주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 방식으로 육성할 경우 생산비를 노지 것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同一한 수고를 갖는 노지 것보다 가는 줄기의 것이 적당하다. 그러나 이것을 용인하든가 예상대로 노지 것과 똑같은 크기의 것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a. 콘테이너 수목은 식재 후 빠르게 성장하여 노지에서 육성한 수목보다는 훨씬 성장이 좋기 때문에 다소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b. 규격이 두가지로 되면, 시공 관리상 번거롭다. 또한 가늘어도 좋다는 것이면 콘테이너수목의 평가가 낮춰져서 보급된 것으로 규격상 문제가 생긴다.

\*현재는 이 범위의 노지육성

수목의 공공용녹화수목 치수규격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두가지로는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콘테이너수목의 규격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게되면 노지 것에도 그대로 적용되리라 예상된다. 그 때 노지 것의 규격을 가늘게 정해 버리면 3.0m 이상의 현재규격으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번의 토의가 오갔으나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수고 1.8m~2.5m의 콘테이너 육성 교목에 대해서는 수고, 수관폭, 콘테이너의 크기 등을 정하고 흉고직경은 표시하지 않는다.」이 결론의 근거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a. 현행의 노지 것의 교목에 관한 건설성규격(안)에서도 2.5m 이하의 것은 흉고직경(줄기둘레 길이) 규정이 없다.

b. 2.5m 이하의 수목의 흉고직경을 높이 1.2m로 측정하게 한다면 아랫가지의 유무에 의한 영향이 크고, 측정치의 신뢰성이 낮다.

예를 들면 수고 1.8m 수목의 흉고를 1.2m의 지점에서 측정하면 거의 무의미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결론은 그런대로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1.5m 이하의 수목에서 근원경의 규격이 있고 3.0m 이상의 수목에서도 흉고직경에 대한 규격이 있으므로 그 중간의 수목에서는 굵기에 대

해 전연 규정이 없다고 하는 것도 모순이다. 이것으로 상기의 결론은 수정되고 「흉고직경 범위에서 근원경을 표시한다」고 하는 것이 된다. 줄여서 「수고 1.8m~2.5m의 콘테이너육성교목의 치수규격 으로서는 수고·수관폭·근원경·콘테이너 크기를 표시한다.」고 하는 것이다. 다만, 근원경을 대략 다음의 방법으로 측정한다면 "수관폭"의 영향을 받는다.

근원 상부에서 몇 cm의 높이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조사 불충분으로 보류했다. 그 때문에 나중에 나타내보이는 규격안에도 이 수치는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잠정적인 결론과 修正案에서 처음으로 내건 논점인 「콘테이너 수목은 노지수목보다 가늘어도 좋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에 대해 현시점에서 관정을 내리는 것은 경험부족, 자료부족으로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생산기술이 향상되면 우선 굵은 수목이 콘테이너로 용이하게 육성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지만 식재사례를 많이 경험해 보면 실눈(細目)의 콘테이너수목에서도 충분히 사용해서 견딜 수 있는 것인지, 예상대로 굵은것이 아니면 순조로운 생육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인지를 판명할 것이다.

④ 수고 3.0m 이상 수고 3.0m 이상인 콘테이너수

목의 치수규격은 노지 것의 건설성 규격(안)과 동일하다. 규격을 노지 것의 계통, 콘테이너수목의 계통 2本으로 한다면 시공관리상 번거로움이 많다. 또한 3.0m 이상의 콘테이너 수목은 작은 수목과 달라서 포장에서 육성시킨 것을 굴취하여 콘테이너에 담아 양성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줄기의 굵기도 노지 것과 동일한 것이 만들어져 같은 규격으로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이용측면에서도 이처럼 큰 규격의 콘테이너수목은 가지치기와 전정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는 특질때문에 당초 시공완성으로 목표했던 것을 요구한 것처럼 훌륭한 수자를 갖고 있는 수목을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런 의미에서도 줄기가 가늘고 빈약한 것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상과 같이 수고 3.0m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현행의 「공공녹화수목의 품질·치수규격기준(안)」과 동일규격으로 하는 셈이 된다. 다만 3.0m까지 교체식방법에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흉고직경 0.12m와 0.15m 2개로 한다. (이와같은 흉고직경을 그대로 인정하는 예는 상기기준(안)에서도 일부 볼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